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시민운동과 입법화의 사례연구*

— 부천시 담배자판기 추방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 광 호**

- I. 머리글
- II. 부천시 담배자판기 추방운동의 배경과 경위
- III. 담배자판기 추방운동에 대한 논의

I. 머리글 : 사례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세계의 현실은 그 성격과 구조를 해명하려는 어떠한 이론적·실천적 노력에도 꿰뚫어 보지 않고 도도하게 제 나름의 원리를 갖고 움직이고 있으며, 청소년세계의 작동원리와 본질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청소년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물론, 철저한 자기반성적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이처럼 이론적 해명을 과업으로 삼는 동종집단들은 원만한 인간관계의 유지라는 명분하에 합

리적이고 치열한 학문적 경쟁관계를 유보한 채, 엄청난 청소년세계의 현실 앞에서는 일종의 신념화된 믿음만을 반복적으로 외치며 무모하리 만큼 오만한 자세로 일관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전문성’의 허구만을 좇으며 주관적 믿음을 공유하려는 동종번식 지향적인 노력들은 청소년세계의 현실적 인식과 문제해결을 지연시켜 왔음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치밀하게 짜여진 이론적 설명들이나 이에 기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준비된 외면’으로 일관하거나, 현학적인 평론적 논리로써 대응하거나, 또는 동종집단간의 유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또다른 실수를 남기게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실수와 외면을 만회해보려

* 이 글은 부천시 담배자판기 추방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천 YMCA 사회교육부 함영미 간사에 대한 면접조사(1992. 6. 30. 16:00~18:00, 서부센타 상남실)와, 이 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학부모 모임에서 2회에 걸쳐 발간한 보고서(1992, 1993)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이 글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실천적 언어 들은 시민운동 과정에서 사용된 것임을 밝혀둔다.

**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는 하나의 작은 시도로서, 잘 조직된 한 지역사회
의 시민들이 벌이고 있는 “내 고장 아이들의 교
육환경을 바르고 건강하게 만들어보자”는 작은
실천운동 사례에 연구적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간적인 삶의 영위를 돕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
극적인 지향점이라면, 삶의 현장에 침투되어 있는
각종의 청소년 유해환경을 찾아내고 개선하여 이
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려는 것은 청소년의 건전육
성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조건
인 것이다. 지금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대
한 우리의 이론적·실천적 관심은 크게 3가지 차
원에서, 즉 법적 규제, 관련업체, 그리고 지역주
민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정부의 청소년
육성정책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
다.

그러나 유해환경 개선의 노력들은 종종 한때의
구호에 그치거나, 예산 확보의 수단으로 혹은 강
연장에서 만만한 이야기꺼리로서 이용되어 왔고,
게다가 다소 과장된 현실비판과 무차별적인 고발
등으로 채워져 온 것도 사실이다. 더욱 안타깝게
도 작은 실천적 노력이 행해질 때, 어떠한 이론적
규명작업도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것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다행히 '90년대에 들어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 본질, 성격 등에 대한
이론적 규명노력(참조: 한준상, 1989, 1991; 도
종수외, 1990)이 시작되고, 학교교육 개선을 위
한 각종 시민운동,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
의 모임’활동, 서울 YMCA가 중심이 된 각종 청
소년문화 개선 운동,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참조:서울지검 동부지청, 1992)’, ‘어머니
병법대의 활동(서울 마포구)’ 등 지역사회내의
조직적인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부천시의 담배자판기 추방
운동을 시작으로, 각 지방에서 청소년보호를 목적
으로 담배자판기 설치금지조례가 입법화되는 성
과를 거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것이 헌법에 명
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영업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됨으로써 작은 실천
운동에서 비롯된 것이 전 국가적 관심사로 확산
되고 그 수준이 급격히 상승되어 청소년보호의
역사적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내의 각종 유해환경을 추방하
여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시민운동에 대한 사례연
구는 개인과 사회에 관련된 문제의 해결과정에
대한 통찰력과 적절한 정책개발의 기초정보를 제
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참조: Miller, 1992,
167-172).

II. 부천시 담배자판기 추방운동의 배경과 경위

1. 추방운동의 시발: “작은 것을 실천하자, 그리고 그것을 큰 것과 연결시키자”

부천시의 담배자판기 추방운동은 '89년 9월 부
천 YMCA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750명의 청소년
을 대상으로 약물남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
년의 술·담배 접촉률이 높고, 술·담배가 모든
청소년비행과 관련이 있으며, 다른 약물사용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면서 시작
되었다. 그후 1년이 지난 '91년 11월 청소년에
대한 담배의 악영향에 주목하여 학교주변 담배자
판기 설치현황을 조사하고, 실제로 '92년 1월
에는 담배자판기 주변에서 24시간 내내 청소년의
이용실태를 관찰조사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이 추방운동은 부천 YMCA가 지역주

민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일구어온 각종 시민운동의 작은 실천과 철학에서 거두어진 필연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환경을 지키는 여성들의 모임’, ‘좋은 방송을 위한 시청자 모임’, ‘올바른 생활문화를 찾아 실천하는 사람들’ 등의 모임이 자발적으로 지역환경 보존의 일환으로 시작한 ‘수은건전지 회수운동’, 공동체적 삶의 부활을 목적으로 한 생활협동운동(우리동대운동)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다는 기본적인 철학이 바탕을 이룬 것이다. 특히 ‘바른교육을 위한 어머니 모임’을 통해 청소년교육의 각종 문제점을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육문제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고, 이를 위해 우선 ‘쉬운 일부터 시작하자’는 합의하에 ‘가족회의’ 개최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조사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모임활동에서의 토의와 담배자판기 설치현황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학교주변에 적지 않은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23.6%가 청소년들이라는 경험적 증거를 찾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그들 말대로 “담배자판기 실태를 조사하다 보니 우리 청소년들의 실상을 많이 알게 된 것이다.” 즉 실태조사 과정에서 얻어진 결속력과 경험적 조사결과들은 시민운동 구성원들의 조직력을 강화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실상의 이해라는 시민운동의 촉발제를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들의 작은 실천과 철학은 청소년 흡연인구의 증가가 양담배 수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지방자치시대하의 지역주민들이 쉽게 실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꿈꾸는 엄청난 모의(?)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즉 지방의회에 부천시역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의 제정을 청원하는 것을 포함한 시민운동의 목표들을 구체화시키게 된 것이다.

2. 뚜렷한 목표설정과 조직력 강화 : “맞서 싸울 상대가 너무 크고 그 내용이 한국사회의 변화에 아주 중요하다”

지역사회 환경개선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편리함과 익명성을 이유로 거리의 담배자판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 결국 담배자판기가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는 경험적 결과에 기초한 신념을 얻게 되자, 부천시역의 건강한 청소년교육환경을 위한 조례제정 추진을 비롯한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하기에 이르렀다(2차보고서: 18). 첫째, 부천시역 담배자판기의 설치금지 조례제정, 둘째, 지방자치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협력에 따른 지자체의 발전 모형을 창출하는 한편 지자체의 실천적 모델에 대한 전 시민적 의식교육, 셋째, 시민조직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지도력 훈련과 잠재된 시민들의 주체적 능력 개발, 넷째,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조례제정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장·단기적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민운동의 목표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선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을 단순히 청소년보호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 과정 전체를 지방자치의 실천과 감시, 더 나아가 그 발전 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의 노력과 성과는 결과나 그 효과에 의해 검증되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목적이자 일정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는 평범한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즉,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노력들은 단지 이 땅의 모든 유해요소를 제거하려는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노력과정 자체가 하나의 바른 삶의 과정이며 필요충분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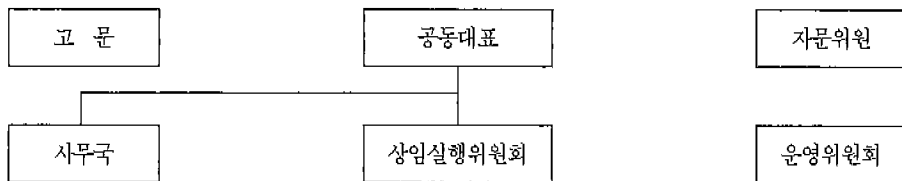
또한 그들의 목표는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의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의지를 담은 청소년 전전육성 및 보호조례의 제정을 꿈꾸고 있다. 물론,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 제정 그것만으로도 정부중심의 규제와 중앙입법만능주의 성향을 가진 우리나라 청소년보호육성 역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더 나아가 지역사회 교육환경을 지키려는 시민운동의 최종적인 목표로서 종합적인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의 제정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필요조건이며 자율적인 규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합적인 보호육성 조례제정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목표이며 모든 이들로부터 지지될 수 있는 과제일 것이다.

그런데 담배추방운동의 입법화 노력은 특정이해를 얻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표현대로 “자연스럽게 모여 유해환경을 조사했고 그 결과 담배자판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그후 대책을 얘기하다 아버지모임의 도움도 필요했고 그러다 모임이 커졌으며 또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그림 1〉

담배자판기 철거 및 설치금지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조직표



〈참가단체〉

담배자판기 철거 및 설치금지 조례제정을 위한 학부모모임(5개 모임)

- 바른 교육을 위한 어머니 모임
- 참여와 자치를 위한 부천시민연대회의 의정지기단
- 부천 YMCA생활협동 위원회
-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부천시민의 모임
- 청소년의 고민과 아픔의 다들들 어머니 모임

〈후원단체〉

부천시 기독교 연합회
 부천 YMCA
 한국노총 경기도 본부 부천지역 지부
 학교 새마을 어머니 총연합회

느낀 것이다.” 즉, 운동목표와 과정은 지역사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동시에 이것의 관철을 위해 조직력 강화가 요청되었던 것이다.

우선 이들은 자기 다른 지향점을 가진 5개 모임 (청소년의 고민과 아픔의 디딤돌 어머니 모임,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부천시민의 모임, 바른교육을 위한 어머니 모임, 참여와 지지를 위한 부천시민연대회의 의정지기단, 부천 YMCA 생활협동위원회 마을지기단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담배자판기 철거 및 설치금지 조례제정을 위한 학부모 모임’을 결성하고 운동의 주체가 되었다. 또한 조례제정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7명의 공동대표를 두고 그 아래에 상임 실행위원회를 주축으로 사무국과 운영위원회를 두는 한편 지역의 정치인과 유지들로 구성된 고문과 관련 전문가집단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외형적 조직을 완비하였다. (<그림 1> 참조) 아울러 부천시 기독교연합회 등 지역내 관련단체를 망라하여 후원단체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동원력을 갖추었다. 이러한 범지역적 조직력의 구비는 최초의 보호육성 조례제정이라는 거대한 상대를 극복하고 보다 큰 것과 연결시키려는 정치화의 한 과정이며 결과라 할 수 있다.

3. 치밀한 전략과 가시적 성과, 그리고 사회적 저항: “이 빛이 비쳐질까?”

조례제정의 목표는 잘 짜여진 조직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목표달성을 위해 구성된 상호간의 투철한 관철의지와 믿음을 유지·확인할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였다. 즉 “우리의 행동과 모습이 자랑스럽게 이야기될 날이 곧 있으리라”는 신념을 공유하고 운동진행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관철의지를 ‘가열하고 한편으로

냉각’시키는 이중전략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갔다.

우선 이들은 외국의 관련사례를 찾는 가운데 담배자판기 설치금지에 관한 미국사례(’92.1 현재 캘리포니아주의회에 상정중인 의안)를 입수하였고, 처음으로 목적·이용제한·설치제한·벌칙 및 상벌규정 등의 내용을 명시한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화 작업을 본격화하였다. 이때 첫번째의 장벽은 조례제정이 상위법에 의한 위임근거가 없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다. 이들은 담배자판기 설치 근거가 되는 담배사업법에 대한 재무부령 1769호의 규정이 보다 상위법인 미성년자 보호법과 상치된다는 점에 착안하고, 관련 주무부처인 내무부와 재무부, 경찰청 및 법무부 등에 수차례에 걸친 질의서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명령회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을 전개하였다.

조례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공개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표현대로 ‘맞서 싸울 상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5월 청소년의 달을 택하여 언론의 지원과 홍보를 위해 중앙언론사 및 지역신문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동안의 운동성과를 담아 ‘담배자판기 철거 및 설치금지 조례제정에 관한 학부모의 의견’이라는 1차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치밀성을 보여주었다. 결국 이들은 전국적인 관심과 주시하에서 ’92년 7월 재무부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공포를 통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범위내에서 자동판매기설치 제한을 기능’하게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작업과 함께 이들은 부천시의회에 조례제정 청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한번 대담한 전략을 보여주었다. 즉 이들은 시

의회 전원의 소개에 의한 청원을 목적으로 정식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의원들에 대한 개별면담을 계획하고 구성원들에게 의원면담을 위한 교육을 3회 이상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의원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인 동시에 개별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설득의 요령을 토의하며, 심지어는 면담시의 복장과 자세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킬 정도로 치밀한 것이었다.

또한 의원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심리적 부담감(?)을 주기 위해 수차례의 전화와, 1천여통 이상의 감사·격려 엽서쓰기 운동을 병행하였다. 한편 그들의 본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성인전용시설을 제외한 부천 전지역 담배자동판매기 철거 및 설치금지 조례제정을 위한 부천시민 서명운동을 계획하고 2차례에 걸쳐 수정한 조례를 청원('92.5.28)함과 동시에 가두 서명운동을 본격화하여 2만 3천여 명의 서명지지를 얻었다(그밖에 자세한 시민운동 과정은 <부록 2> 부천지역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제정운동 일지 참조).

이들의 치밀한 전략과 시의회 의원들과의 수차례에 걸친 시민의견 수렴, 관계자회의를 통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상호신뢰 공유의 노력들은 결국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가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92.7.27)되는 결실로 나타났으며, 한국사회 최초로 청소년보호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공포(8.12)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이들의 작은 실천과 철학이 일구어낸 성과와 빛은 부천시에 한정되지 않고 전북 남원시, 서울시 강남구 등 기초자치지역 및 서울시와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에까지 확산되어 열매를 맺어 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조례제정의 가시적 성과는 또다른 고난을 겪고 있다. 즉, 담배자판기의 설치제한 법

위에 대한 논란과 담배소매인등 관련이해 당사자의 사회적 저항이 일고 있다. 즉, 조례의 경과조치로서 시행전에 설치된 자판기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부천시에서 자진철거를 권고하는 한편, 소매업자를 설득하여 자진철거서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과조치 만기일('92.11.11)까지도 극소수의 자판기만 철거되었을 뿐이다. 또한 담배자판기주식회사와 일부 담배소매업자들은 철거의사가 있음을 공식화하고 자진철거 요구 등으로 인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서를 시의회에 접수('92.10.31)시키고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더욱이 서울시 강남구 조례에 대해 강남지역 담배소매업자 12명은 조례 제4조와 부칙의 설치제한과 경과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례라는 내용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92.11.5)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일부의 사회적 저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집약되고 있다 (참조: 최종백, 민병일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첫째,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참조: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률의 위임없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조례제정 자체가 법규와 헌법을 무시한 것이다. 둘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자판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음에도 전 지역을 설치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제정권 행사이며 직업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판기

〈표 1〉 기초자치단체들의 담배자판기설치 관련 조례내용 비교

	경기도 부천시	전북 남원시	서울 강남구
명 칭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 조례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
근 거	부천시 조례 1197호	남원시 조례 741호	강남구 조례 207호
공 포 일	1992. 8. 12	1992. 9. 4	1992. 10. 16
목 적	담배사업시행 시행규칙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판기 설치제한 규정 목적	담배자판기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접촉이 용이한 업소나 장소에 자판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제력이 약한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호기심 및 욕구를 억제시켜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비행을 방지하여 건전한 지역사회조성을 목적	담배사업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1조의 규정에 근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담배자판기의 설치제한을 목적
적 용 범 위	전지역의 담배소매인	전지역의 담배소매인	전지역의 자판기
설 치 제 한	자판기는 전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 안에는 제외	전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이 출입하는 업소나 학교보건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위생정화구역내에는 설치할 수 없음	자판기는 전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안에는 제외
성 인 규 정	20세 이상	20세 이상	20세 이상
비 고	목적에 청소년보호 명시없음. 전지역 설치제한	목적에 청소년보호 명시. 청소년업소와 정화구역에만 설치제한	목적에 청소년보호 명시. 전지역 설치제한

비고) 부천시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참조

까지 철거를 강요하는 것은 소금입법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인 영업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셋째, 남원시 조례의 설치제한의 내용과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남구등 특정지역 거주 자판기 운영자만 차별대우를 받게 되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에 대해 법률적인 해석을 달리하거나 합헌임을 주장하는 입장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참조: 이용철,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

판청구에 대한 답변자료). 첫째, 현행 미성년자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담배소매인은 자신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이나 자판기를 통한 간접적 판매인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구입 못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담배접근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서 전지역에 대한 설치금지가 불가피하며, 상대정화구역내로의 제한규정은 일응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각급학교의 지역적 편재로 미루어 제외지역은 매우 한정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금지구역상의 차이가 없다. 둘째, 조례에서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담배접근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성인전용업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담배자판기를 통한 간접 판매방식의 영업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이므로 결코 영업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조례의 규제는 담배에 대한 전면적인 판매규제가 아니라 일반소매인, 구내소매인, 임시소매인, 자동판매기에 의한 판매 등의 다양한 판매방법 중 자판기에 의한 판매만을 규제하는 것이며, 그것도 성인전용시설을 제외한 곳에만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성인들은 전용시설내에서나 나머지 방법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고, 판매업자는 어느 정도 판매방법상 제약을 받지만 영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완강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해 있는 한국 최초의 청소년보호 관련조례의 운명은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부천시 담배추방운동 주체들은 자진철회 거부 등의 사회적 저항에 대해 그 근본 원인이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광역자치단체까지만 조례에 의한 벌칙권한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조례제정권만 있기 때문에 조례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없는 데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이들은 처음의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제정을 위한 학부모 모임’을 ‘담배자판기추방 부천학부모 대책위원회’로 조직을 전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방향을 다음 두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우선 담배사업법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벌칙을 지방의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을 국회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히 해주어야 하고, 지자체의 성장·성숙을 위해 기초의회에도 조례제정 권

한과 함께 벌칙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구체적인 대응전략으로 담배자판기 설치 소매업소에 일차적으로 운동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시민 불매운동’을 전개하며, 미성년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미성년자의 담배자판기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소매업자를 고발조치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나아가 시민운동의 전국화와 정치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판기 추방을 위한 전국학부모 협의회(가칭)’를 결성하여 조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각당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서명운동에 참가해준 일반시민에게 일일이 감사편지를 보내고 자진철회 거에 응한 소매업소에 ‘담배자판기 자진철회 접포, 자랑스런 부천시민’ 등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사후관리의 치밀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맞서야 할 상대는 더욱 커져가고만 있다.

III. 담배자판기 추방운동에 대한 논의 : 전망과 과제

1.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시민운동의 교과서적 모델 : “자판기를 없앴다고 청소년 흡연율이 떨어질까요?”

부천시의 담배자판기 추방운동 과정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에 총체적 전망을 제시해주는 하나의 실천적 시민운동의 교과서적 모델이다. 그들은 뚜렷한 운동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기에 앞서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를 경험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확인하였다. 이는 유해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서 경험적인 조사연구의 선행이 얼마나 중요하며 필수적인가를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다. 결국 담배자판기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개선대상이었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청소년의 삶의 현장과 현실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시민운동을 통한 청소년 보호육성의 입법화³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담배자판기가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긴다는 비난은 지극히 정당하고 현실적인 것이다. 즉,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상에 의한 판매와는 달리 청소년들이 타인을 의식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없이 쉽게 담배를 구할 수 있으며, 게다가 24시간 작동함으로써 밤낮으로 구입 가능하고, 길거리에 공개적으로 진열되어 있어서 구입의욕을 자극하며,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담배구입을 규제하기 어렵게 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그들이 경험적으로 확인한 결과 가운데, 청소년의 담배자판기 이용률이 23.6%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용시간대의 조사결과를 보면 그들의 현실인식의 정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2:00-04:00시의 심야 자판기 이용률(37.0%)이 전체 이용률(17.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대체적으로 오후와 야간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흡연이 청소년비행과 관련성이 크다는 그들의 주장은 다른 일반 연구물들의 조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담배자판기의 이용경험이 흡연, 음주, 패싸움 등과 같은 많은 청소년비행과 관련이 깊고, 전체 청소년의 85%가 스스로도 담배자판기가 유해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참조: 도중수외, 1990: 192, 154)에서도 그들의 명확한 현실인식이 지지되고 있다.¹⁾

<표 2> 담배자판기의 시간대별 이용실태

구 분	전체이용자	청소년 이용자
16:00-22:00	88(33.0)	28(31.8)
22:00-04:00	46(17.2)	17(37.0)
04:00-10:00	37(13.9)	2(5.4)
10:00-16:00	96(36.0)	18(18.8)
계	267(100.0)	65(23.6)

비고: 실태조사 보고서의 자료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였음.

또한 부천시민들의 담배추방운동에서 돋보이는 것은 자판기설치금지 조례제정이라는 단기적 목표와 청소년보호육성 관련 조례제정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하고, 이것의 관철을 위해 상호간의 믿음과 결속을 확인하면서 조직력을 바탕으로 사전준비와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는 구성원들의 성급한 야심을 냉각시키고, 특정 운동이 몇몇 대표자의 위상정립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심리적 장치까지도 고려하는 등 민주적·과학적 관리의 원칙을 실천하여 왔다.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노력의 결과에 대한 효과 논쟁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모든 운동과정을 통해 제시하였다. 사실상 담배자판기를 없앤다고 해서 청소년의 흡연율이 감소될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와 검증은 그들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져져 있는, 영원히 풀 수 없는 그러나 접근해야만 할 과제이다. 그들의 작은 실천과 경험적 결과에서 얻어진 신념은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반증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개인적 모성(母性)에 집착하지 않고 사회적

1)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1990년에 발간한 한 보고서에서 담배자판기가 청소년들의 상습적 흡연의 통로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더하여, 「청소년보호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담배자판기의 설치제한을 조례에 포함할 것을 정책제안 한 바 있다(참조: 도중수 외, 1990: 191-192).

모성으로 승화시킨 실천운동은 그 과정자체로서 우리사회에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교육적 의미를 전해주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장기적 목표로 제시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의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에서 관철되고 지지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청소년보호육성 조례제정은 현재 일부 청소년관련 전문가집단에서 제기하고 있는 두가지 주장 (참조: 한국청소년학회, 1992)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나아가 청소년 유해환경의 사회적 관리원칙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 두가지 주장의 하나는 각종 사회적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청소년보호법(가칭)」 등과 같은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행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법령중 서로 상충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들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제 규정들의 상호 모순성이나 실효성의 재검토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 없지만, 소관부처가 산재해 있고 한국사회의 행정관행으로 볼 때 종합적인 조정·검토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조례제정을 통해 그 모순성과 실효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또한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중앙입법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조례제정이 유해환경의 규제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극소화시킬 수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며, 규제결과는 언제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근접해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우선적으로 관리·규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며 전제이다 (참조:

도종수의, 1990; 이광호, 1992:224).

둘째, 청소년보호육성조례의 제정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관행화되어 반복되고 있는 중앙정부 중심의 청소년 유해환경 대책수립과 규제를 과감하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의 각 관련부처들에서는 매년 유해환경 규제와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그 의지와 실효성은 지역사회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청소년육성행정체계는 각 시·도에 '청소년과', 시·군·구에 '체육청소년계' 등의 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이 기관들은 이미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관심사가 된 관할지역의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의 제정에 대해 준비된 외면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청소년육성 사업이 여러 부처나 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청소년 조례의 제정은 이들을 긴 잠에 깨어나게 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심어줄 수 있고, 현실적으로 관련기관과 상호 협력체제를 구성하여 비로소 해당지역의 청소년보호육성 행정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행정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다.

셋째, 조례제정은 그것이 갖는 사회적 관리의 효과여부에 상관없이 지역사회의 시민운동과 업계의 자율적 규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이자 최후의 선택으로 보여진다. 우선 조례제정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지역주민과 관련업계의 관심과 이해관계의 조정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조례제정 자체는 부천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또한 조례에 지방정부의 청소년 육성의지와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고 지역주민과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규제를 지원·진흥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이들과 밀접한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 앞으로의 과제 : 다시 한번 아심을 냉각시킬 때이다

부천시 담배자판기 추방운동의 의지와 실천은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보호의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저항의 확대가 예상되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이 운동의 정신과 신념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유흥업소 출입제한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개정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18세 미만 청소년의 당구장출입제한 규정의 위헌판결 등 일련의 사태는 시민운동의 앞날을 낙관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의 사회적 저항은 시민 입법화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딪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현실이다. 그들의 반대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결코 그들은 시민 입법화운동의 적대세력이 아니라 동반자인 것이다. 역설적인 것 같지만, 관련업계의 반대와 저항은 어떤 의미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정이 지니는 교육적 의미의 다른 한쪽일 뿐이다. 시민운동의 작은 실천이 고귀한 우리의 체험이듯이 그들의 저항 또한 보호되고 배려되어야 할 우리사회의 자산이다. 단지 그들이 귀기울여 들어야 할 사실은, 지금과 같이 청소년들 앞에 담배자판기를 계속해서 방치해둔다면 머지않아 미국사회와 같이 기계파손과 도난

피해 때문에 자판기를 거리에 내놓을 수조차 없어 스스로 족쇄를 채우거나, 안전한 건물안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되는 이웃 지구촌과 같은 현실에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담배자판기 추방운동 주체들이 부분적인 사회적 저항에 대응하는 것의 일환으로서 담배사업법 중 관련법규의 벌칙사항의 개정과 기초자치단체에 조례제정권 뿐만 아니라 벌칙권한의 부여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표현을 빌면 싸워야 할 상대를 지나치게 크게 만들 위험이 있다. 즉, 이는 매우 장기적인 시간을 요구한다. 또한 이 목표관철은 기초자치단체에 조례에 의한 벌칙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규제에 따른 혼란을 극소화하려는 법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부딪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보다는 작은 실천의 의미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본래의 목표대로 하루빨리 담배자판기 설치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인 청소년보호육성조례의 제정에 역량을 결집시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적절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조례제정과 벌칙권한을 갖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는 강력한 벌칙조항을 수반해야 하는 유해환경의 규제에 초점을 두어 ‘규제와 벌칙중심형’으로, 조례제정권만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특정환경의 개선과 청소년보호육성을 조장·지원할 수 있는 관련조항을 중심으로 하여 ‘건전육성형’으로 제정하는 등 적절한 역할분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욱이 현재 부천시 조례를 계기로 각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동일한 특정환경을 대상으로 유사한 목적과 규제 내용을 담은 조례를 경쟁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입법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규제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그 자체가 비생산

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아울러 포괄적인 청소년육성조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① 지역사회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육성 의지를 표명하는 분명한 목적 ②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시행상의 주의 또는 범위 ③ 유해 인정기준 ④ 판매 등 유해환경 규제—업계의 자율규제, 도서관·유해완구류 등의 규제, 유해행위를 위한 장소제공 및 알선 등과 같은 기타 영업제한, 입장과 출입제한 등의 유해환경 규제, 흡연·음주 등 기타 유해행위 규제 ⑤ 위반시 벌칙조항 ⑥ 지역주민의 자율적 규제 운동을 지원 조장하는 조항 ⑦ 표창 등의 장려사항 등이다.

이러한 청소년조례의 제정을 현실화하고 지방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청소년 사회환경 개선의 중심이 되게 하려면, 막연히 선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유해행위와 유해업소의 방치를 금하는 책임과 민간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조장하는 지원 정책을 강구하도록 한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48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와 처벌의 위임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이는 어떤 다른 법의 개정요구에 앞서 시민운동의 작은 실천으로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지금껏 외면과 방관으로 일관해 온 청소년육성 관련부처나 기관, 단체 및 전문가집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

참 고 문 헌

담배자판기 철거 및 설치금지조례제정을 위한 학부모 모임(1992), 담배 자동판매기 철거 및 설치금지 조례제정에 관한 학부모들의 의견.
담배자판기 철거 및 설치금지조례제정을 위한 학부모 모임(1993), 담배 자동판매기 추방운동 2차 보고서.
도종수 외(1990),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1992),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백서.
이광호(1992), “유해사회환경 개선의 전제와 방향”, 제1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전국대회 발표자료.
이광호(1992), “청소년 유해환경의 이해와 규제”, 한국청소년연구원 편, 청소년문화론, 서

울: 한국청소년연구원.
이광호 편역(1992), “청소년 유해환경과 규제의 정당성”, 한국청소년연구, 3(2).
이광호 편역(1992), “청소년 유해환경 법제와 운용”, 한국청소년연구, 3(3).
이광호 편역(1992),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유해환경의 자율규제”, 한국청소년연구, 3(4).
이용철(1993),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자료”.
체육청소년부(199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
최종백, 민병일외(1993),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한준상(1989), “교육환경 개선 운동론”, 서울 YMCA 시민자구운동본부, 청소년유해환경

의 실패와 대책.
한준상(1991), “청소년 유해환경과 청소년정책”,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운동 심
포지움 발표원고.

Miller, G. (1992), “Case Studies”, Borgatta, E.
F. & Borgatta, M. L. (eds.), *Encyclopedia
of Sociology*,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부록 1〉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

- 제1조(목적) 담배사업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의 설
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인”이라 함은 만 20세 이상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 전지역의 담배소매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설치의 제한) 자판기는 부천시 전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성인 출입하는 업소안에는 제외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설치된 자판기는 시행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인이 출입하는 업소의 종류) 조례 제4조에서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라 함은 〈표 1〉과 같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표 1〉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의 종류(2조 관련)

■ 업종 ■	● 일반유흥접객소 ● 호 텔 ● 공장구내	● 무도유흥접객업 ● 성인 오락실 ● 기타 성인이 대부분 출입하는 업소	● 외국인전용유흥접객업 ● 공공기관
--------	------------------------------	---	------------------------

〈부록 2〉

부천시역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제정 운동일지

1991년 11월~1992년 11월 11일

날 짜	내 용
89.9.20~10.20	부천시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91.11.8~11.14	학교 주변 담배자판기 설치현황 조사
92.1.8~1.9	담배자판기 이용실태 조사(24시간 조사)
92.2.	담배자판기 설치금지에 관한 미국사례(92.1.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상정중인 의안입수 번역본)
92.4.21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 초안작성
92.4.23	내무부장관앞 공문발송(재무부령 제1769호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1항의 상이점에 관한 공개질의서)
92.4.29	재무부장관앞 공문 발송(담배자판기설치에 관한 ‘명령’회수 공개 요구)
92.5.7	‘담배자판기 철거 및 설치금지 조례지정에 관한 학부모들의 의견’ 자료 집발간(A4사이즈 76쪽)
92.5.7	‘부천시 담배자판기 설치금지조례(안)’수정
92.5.11	4월29일자 공문에 대한 재무부답신 도착
92.5.11	4월 29일자 공문에 대한 재무부답신 도착
92.5.11	의원면담을 위한 교육(1차)
92.5.12	의원과의 만남을 위한 전화작업(담배자판기운동의 취지설명을 위한 사전작업)
92.5.12	부천시의회 운영위원들과의 만남 1. 시간 : 12 : 00 ~ 14 : 00 2. 장소 : 부천시의회 의장실 3. 면담자 : 박경자회원/함영미간사/황주석총무 4. 참석의원 : 이문수(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근옥(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박노운(운영위원회간사) 5. 내용 :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제정운동’취지설명
92.5.13	부천시의회사회·산업위원회앞 공문발송

날 짜	내 용
92.5.15	의원면담을 위한 교육(2차)
92.5.15	‘부천시 담배자판기 설치금지조례안’확정
92.5.18	의원면담을 위한 교육(3차)
92.5.25	내무부 답신이 없어 공문재발송→재발송은 법무부, 경찰청 추가 발송
92.5.25~6.17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제정’을 위한 회원서명운동
92.5.26	부천시 임시의회 상임위원회(사회·산업위)에서 제안설명 1. 시간 : 14 : 00~14 : 30(30분간) 2. 장소 : 부천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실 3. 설명 : 함영미간사 4. 참석 : 모인진위원장/강근옥간사의원. 이후복의원/최순영의원, 김동선의원/이정석의원, 이갑만의원 5. 내용 :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제정운동’제안설명
92.5.28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청원서’접수
92.5.29	내무부 답신 도착
92.5.29	법무부 답신 도착
92.5.30	재무부법령안 입법예고 담배사업법시행 규칙중 개정령안입법 공고
92.6.1	‘가두서명운동 준비위원회’모임 1. 시간 : 지역별로 오전 오후 2. 장소 : 구동부센타/서부센타/마을지기집 3. 대상 : 마을지기/신·구등대지기 4. 내용 : 가두서명운동에 대한 의미설명－마을별로 가두서명운동 시간표짜기 5. 강사 : 함영미, 윤병국, 김영득간사
92.6.2	부천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간담회개최→조례제정 추진키로→소위구 성(최순영/김일섭/김동선/이종길의원)
92.6.5	‘가두서명운동’시작
92.6.8	경찰청 답신 도착
92.6.9	부천시의회 공문 접수 1. 발신 : 부천시의회 2. 수신 : 고원철대표 청원인 앞 3. 내용 : 청원서접수에 따른 1차 회신

날 짜	내 용
92.6.10	부천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 열림→간담회후 가두서명운동 YMCA회원 격려차 방문
92.6.11	재무부 공문 접수
92.6.12	부천시의회 공문 접수
92.6.13	경찰청과 재무부에 공문 재발송 1. 발신 : 부천 YMCA 2. 수신 : (1)경찰청장/(2)재무부 3. 내용 :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과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1항의 상이점에 관한 경찰청의 구체적인 입장 촉구 (2) 재무부공고 제9212호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92.6.15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회 1. 일시 : 92.6.15.14:00~17:00 2. 주최 : 부천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3. 장소 : 부천시의회 회의실 4. 내용 : 자료 참조
92.6.18	공동대표모임
92.6.22	경찰청 답신 도착
92.6.29	'부천시민의견수렴회' 1. 일시 : 1992.6.29.10:00~11:40 2. 장소 : 시청 대회의실 3. 주최 : 부천시의회 4. 참석자 : 송철흠의장외 9명 시의원/청소년대표, 학부모대표/ 담배소매인 대표/담배인삼공사 부천지부/시민 167명
92.6.30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방문
92.7.1	'엽서쓰기운동'전개 1. 대상 : 부천시의원에게 600장의 감사와 격려의 엽서발송 2. 발신자 : YMCA전학부모
92.7.3	서명운동 참여자에게 보내는 감사편지 발송
92.7.24	재무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92.7.27	제12차 부천시 임시의회 개원 담배자판기 설치금지조례제정 만장일치로 통과
92.8.12	'부천시 담배자판기 설치금지조례 공포'

날 짜	내 용
92.8.30	시민연대회의 2차 정기총회 성명서 발표
92.10.23	‘시정조정위원회’에서(위원장: 박계민부시장)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시행규칙안’통과
92.10.31	담배소인인(국산)43명의연서로자판기철거거부 청원서접소(대표청원인:이창신)
92.11.6	담배소인인 11명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담배자판기 설치금지조례안’ 위헌 소송제기
92.11.6	상임실행위원회→‘담배자판기추방 부천학부모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
92.11.9	‘대책위원회’ 2차 모임
92.11.11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에 따른 기존설치 자판기철거 경과기간 만 료
92.11.16	‘대책위원회 3차 모임’
92.11.23	‘대책위원회 4차 모임’